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32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은혜 · 김상훈 · 김선교  
최수진 · 고동진 · 서천호  
김소희 · 엄태영 · 조승환  
곽규택 · 김미애 · 신동욱  
김기현 · 최형두 의원  
(14인)

제안이유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당초 기대했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는바, 사전투표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과 예측 불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이에 선거제도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시키는 한편,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

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 2)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 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 4)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2항).
-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8)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라.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안 제171조의2 신설, 제178조제1항 등),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만 개표소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안 제173조제1항),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등).

마.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안 제186조의

2제3항 신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 및 개표관리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요일”을 각각 “금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단서·나목 및 다목 중 “수요일”을 각각 “금요일, 토요일”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일의 첫째 날 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의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의 첫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재자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부재자

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조 제4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선거인  
명부의”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  
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각각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하  
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  
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 “제37조의2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選舉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을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각각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에서”를 “부재자투표소에서”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부재자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하고 부재자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부재자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한다.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의 제목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를”을 “부재자투표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

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마감”을 “부재자투표마감”으로, “또는 사전투표기간”을 “또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자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부재자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명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전투표절차”를 “부재자투표절차”로 한다.

- 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제162조의 제목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소별”을 “부재자투표소별”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소에서”를 “부재자투표소에서”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를 “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소마다”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를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로 한다.

제163조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4조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6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 안에서”를 “부재자투표소 안에서”로 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70조를 삭제한다.

제171조 중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개표관리관”으

로 한다.

제11장에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2(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개표관리관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으로 본다.

③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개표사무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으로 본다.

제172조제1항 중 “開票事務는”을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 개표관리관이,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는”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 본문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를 위하여”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開票事務”를 “개표소에서의 개표사무”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전투표”를 각각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사전투표함”을 각각 “부재자투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7조제1항 본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개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8조제1항 중 “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를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투표소별로, 개표소에서의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표사무를”을 “투표소 및 개표소의 개표사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 개표관리관이 송부한 개표상황표와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로 한다.

- ③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결과를 집계·작성한 개표상황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開票所안에서”를 “투표소 및 개표소 안에서”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2인”을 “6명”으로, “6인”을 “3명”으로, “9인”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開票參觀人”을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開票所안에서”를 “투표소 또는 개표소 안에서”로,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을 “해당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소 안 또는 개표소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개표관리관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을,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를 “투표소 및 개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를 “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을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표사무원”을

“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를 “개표관리관이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은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로, “때에는 開票所의”를 “때에는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開票所안에”를 “투표소 또는 개표소 안에”로,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開票所안에서”를 “투표소 또는 개표소 안에서”로 한다.

제184조 중 “投票區別”을 “투표소 또는 투표구별”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선거물품등의 관리 및 폐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이하 “선거물품등”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 제222조에 따른 선거소송 및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하 “선거쟁송”이라 한다)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등을 폐기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선거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선거물품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무단 유출되거나 훼손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물품등의 관리 대상, 회수 절차 및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13조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 단서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한다.

제216조제2항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體의 長의 選舉는 그 任期滿  
了日전 30日 이후 첫번째 수  
요일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  
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舉日前日이나 그 다음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생략)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  
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  
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  
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  
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  
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  
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  
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  
다.

-----  
-----금  
요일과 그 다음 날

② -----  
-----  
-----  
-----  
-----  
-----  
---금요일과 그 다음 날---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  
-----  
-----  
-----  
-----  
-----  
-----  
-----  
-----  
-----  
-----.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  
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재선거 중 3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한다.

2.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가. -----  
-----  
-----  
----- 금요일, 토요  
일-----.  
-----  
-----  
-----  
----- 금요일, 토요일-----  
-----.

나. -----  
-----  
-----  
-----  
-----  
----- 금요일, 토  
요일-----.

다. -----  
-----  
-----  
-----  
-----  
----- 금요일, 토요  
일-----.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  
일의 첫째 날 전을 말한다.

<신 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의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의 첫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재자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부재자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생략)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2. (생략)

③ (생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부재자투표소-----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3. (생략)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 6. (생략)

⑤ ~ ⑧ (생략)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④ -----  
-----  
-----  
-----.

1. -----  
-----  
-----부재자투표소-----  
-----  
-----  
-----

2. 3. (현행과 같음)

4. 부재자투표소-----  
-----  
-----  
-----

5. 부재자투표소-----  
-----  
-----  
-----

5의2. 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

② ~ ⑨ (생략)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③ (생략)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

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이하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

②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  
-----.

③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⑥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5. (생략)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手當과 식비

7. (생략)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⑤ (생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부재자투표참관인-----  
-----

7. (현행과 같음)

④ -----  
-----부재자투표참관인-----  
-----  
-----  
-----  
-----  
-----부재자투표참관인-----  
-----  
-----  
-----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부재자투표관리관) ① -----  
-----  
-----  
-----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

② -----부재자투표관리관-----  
-----  
-----  
부재자투표관리관-----.

③ -----  
-----  
-----  
-----  
부재자투표관리관-----  
-----.

④ -----부재자투표관리관-----  
-----  
-----.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  
-----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

·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3. (생략)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

(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투표소-----

1.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

2. 3. (현행과 같음)

4. -----부재자투표소-----

② -----부재자투표소-----

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  
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  
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  
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  
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  
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  
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  
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

-----  
-----  
부  
재자투표소-----  
-----.

③ -----  
-----부재  
자투표소-----  
-----  
-----  
-----부재자투표사무원  
-----.

④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  
표사무원-----  
-----  
-----  
-----.

⑤ -----부재  
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투표  
신고인명부-----  
-----  
-----  
-----  
-----.

⑥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사무원-----

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② (생략)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 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⑤ (생략)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

-----  
-----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함-----

-----부재자투표자수-----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

-----  
-----  
-----.

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⑦ ~ ⑨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생략)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한다.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内外의 異狀有無에 關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第155條(投票時間)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  
-----부재자투표소-----  
-----  
-----  
-----  
-----부재자투표소-----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  
-----  
-----부재자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



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⑦·⑧ (생략)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

-----  
-----  
---

⑦·⑧ (현행과 같음)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⑥ 제4항 단서-----  
-----  
-----  
-----

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  
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  
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  
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  
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  
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  
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  
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  
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  
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

-----  
-----  
-----.

제158조(부재자투표) ① 부재자투  
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  
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부재자투표를-----  
부재자투표소-----  
-----  
-----  
-----.

③ 부재자투표관리관은-----  
-----  
-----  
“부재자투표관리관”-----  
-----  
-----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생략)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

-----  
 --부재자투표함-----부재자투표자수-----  
 -----

-----  
부재자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참관인-----  
 -----

-----부재자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참관인-----  
 -----

2. -----  
 -----  
 -----부재자투표함-----  
 -----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부재자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명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

-----부재자투표절차-----  
-----  
-----.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①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  
-----  
-----  
-----.

② -----  
-----  
-----부재자투표소별-----부재자투표참관인-----  
-----  
-----

부재자투표기간-----부재자투표소에서-----.

③ 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소마다-----  
-----  
-----  
-----  
-----부재자



⑥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 ① ~ ③ (생략)
-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 ① ~ ③ (생략)
-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禁止)

- ① (생략)
-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  
-----  
-----.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부재자투표소-----  
-----  
-----.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부재자투표소-----  
-----  
-----  
-----부재자투표관  
리관-----부재  
자투표사무원-----.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禁止)

-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재자투표소-----  
-----  
-----  
-----.



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參觀人 1인과 호송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選舉人名簿 기타 選舉에 관한 모든 書類를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신 설>

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  
-----  
-----개표관리관-----  
-----  
-----.

제171조의2(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개표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개표관리관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으로 본다.

③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郵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投入·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6조(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부재자투표-----  
-----

② -----  
-----부재자투표함-----  
-----

③ -----  
-----부재자투표함-----  
-----



기재된 投票用紙 交付數와 對照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투표소별로, 개표소에서의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② -----  
---투표소 및 개표소의 개표사무를-----  
-----  
-----  
-----  
-----  
-----  
-----  
-----.

③ 개표관리관은 개표 후 개표결과를 집계·작성한 개표상황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  
-----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  
 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  
 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  
 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  
 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⑤ (생략)

제179조(무효투표) ① (생략)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  
 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  
 로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제3항에 따라 개표관리관이 송  
 부한 개표상황표와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  
 상황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  
 표상황표에 의하여-----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179조(무효투표) ① (현행과 같  
 음)

② 부재자투표-----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181조(개표참관) ①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 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 區域안에서 실시되는 選舉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④ -----  
-----  
-----.

1. ~ 9. (현행과 같음)

10. 부재자투표소-----  
-----  
-----

제181조(개표참관) ① -----  
-----  
---투표소 및 개표소 안에서-----  
---

②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별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2명을, 무소속후보자는 1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 교체 신고를 할 수 있다.



違法事項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⑨ 開票參觀人은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언제든지 巡廻·監視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 電話·컴퓨터 기타의 通信設備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다.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⑪·⑫ (생략)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그 上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

-----  
-----  
-----  
-----.

⑨ -----투표소 또는 개표소 안에서-----  
-----해  
당 개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소 안 또는 개표소 안-----  
-----  
-----  
-----.

⑩ 개표관리관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

⑪·⑫ (현행과 같음)

第183條(투표소 및 개표소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 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觀覽證을 배부받은 者와 放送·新聞·通信의 取材·報道要員이 一般觀覽人席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③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開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第3項의 요구에 의하여 開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개표사무협조요원-----

-----  
-----  
-----  
-----  
-----  
-----  
-----  
-----  
-----  
-----

② -----  
---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

-----  
-----  
-----  
-----  
-----  
-----  
-----  
-----  
-----  
-----

③ 개표관리관이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은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때에는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투표소 또는 개표소 안에-----

또는 警察官署長은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⑥ 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 수 없다.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區·市·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封印하여야 한다.

<신 설>

-----개표관리관 또는 區·市·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⑥ -----투표소 또는 개표소 안에서-----.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투표소 또는 투표구별-----  
-----개표관리관 또는 區·市·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86조의2(선거물품등의 관리 및 폐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

품 및 장비(이하 “선거물품등”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 제222조에 따른 선거소송 및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하 “선거쟁송”이라 한다)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등을 폐기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선거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선거물품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무단 유출되거나 훼손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물품등의 관리 대상, 회수 절차 및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② (생략)

③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舉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④ 同時選舉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2조(거소투표·부재자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1. (현행과 같음)

2. 부재자투표소-----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재자투표참관인-----

④ -----부재자투표참관인-----









장에서 같다) · 선장 · 입회인  
에게 金錢 · 物品 · 車馬 · 響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 7. (생략)

② ~ ④ (생략)

⑤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 · 직  
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  
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  
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하  
다)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  
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  
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  
役に 處한다.

⑥ ~ ⑧ (생략)

제242조(투표 ·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

-----  
-----  
-----  
-----  
-----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부재자투표  
관리관-----

-----  
-----  
-----  
-----  
-----  
-----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2조(투표 ·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  
-----  
-----  
-----

1. -----  
-----

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생략)

②·③ (생략)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  
-----  
-----부재자  
투표소-----  
-----  
-----  
-----  
-----  
-----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  
-----  
-----  
-----부재자투표사무원-----  
-----  
-----  
-----  
-----





